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9나110672, 2019나110689(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9나110672, 2019나110689(병합)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9 선고 2017가단6696, 2017가단8364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1. B

2. C

원고들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주

피고, 피항소인 D

변론 종결 2021. 2. 24.

판결 선고 2021. 3. 24.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6. 19. 선고 2017가단6696, 2017가단8364(병합)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각 2017. 12.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각 2,342,79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2.부터 2021.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55,9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금전청구 부분 중 원금의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47,04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를 위와 같이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슬하에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하여 4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2015. 8. 21.자 유언공정증서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유증하고, 2015. 9. 2. 피고에게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상속인은 2017. 1. 7.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1/7씩 공동 상속하였다.
라. 이후 별지 목록 제1,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2017. 8. 1.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8. 3. 위 나.항 유언공정증서 작성일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은 피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017가단6696 사건(제1심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6696 사건에 같은 법원 2017가단8364 사건을 병합하였는바, 이하 별도의 언급이 없는 증거의 경우 2017가단6696 사건의 증거를 의미하고, 2017가단8364 사건의 증거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한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17가단8364 사건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아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의 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14 지분의 이전과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부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잔액이 10,262,196원인 피상속인 명의 J은행 Q 계좌 예금 채권이 있었고,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부동산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피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증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제1,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다른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피상속인을 모시는 자녀가 별지 목록 제1, 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위 부동산의 각 상속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피상속인은 2015. 8. 21.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2017. 8. 3. 위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이 '2015. 8.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에 반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유증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상속인 명의 J은행 R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예금 및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서 발생한 소작료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81,787,920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용한 7,809,040원을 제외한 나머지 73,978,880원과 S으로부터 피상속인 소유 토지의 소작료로 지급받은 5,204,000원 합계 79,182,880원을 피고의 특별수익액으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5. 4. 19.경부터 피상속인을 모시기로 하였고, 피상속인은 치매, 뇌경색증,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2015. 5.경부터 2016. 7. 4.까지 L요양병원에, 치매, 시각장애, 다발관절염 등으로 2016. 7. 13.부터 사망 시까지 M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 피고는 2015. 4. 19. 이후로 피상속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위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5. 4. 19. 당시 위 계좌의 예금 잔액은 8,301,506원이었고, 이후 위 계좌 및 피고 명의 J은행 T 계좌에 입금된 피상속인 소유 돈은 아래 표와 같이 86,541,857원에 이른다.

이 사건 계좌	2015. 6. 28.	예금이자	1,383
2015. 7. 25.	U(G의 남편)	30,000,000	
2015. 9. 1.	피상속인	41,292,567	

이 사건 계좌	2015. 6. 28.	예금이자	1,383
2015. 10. 21.	G	5,000,000	
2015. 10. 23.	G	5,000,000	
2015. 12. 27.	예금이자	16,616	
2016. 3. 27.	9,882		
2016. 6. 26.	5,399		
2016. 9. 25.	2,322		
2016. 12. 25.	688		
피고 명의 J은행 계좌	2017. 1. 3.	V	2,389,000
2015. 12. 31.	2,824,000		
합계	86,541,857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자신 및 배우자 N 계좌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4,286,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1	2015. 4. 23.	피고(K은행 계좌)	1,000,000
2	2015. 5. 3.	3,000,000	
3	2015. 8. 15.	1,000,000	
4	2015. 9. 9.	8,000,000	
5	2015. 10. 27.	5,000,000	
6	2015. 12. 15.	3,000,000	
7	2016. 1. 27.	피고(J은행 계좌)	11,000,000
8	2016. 5. 3.	10,000,000	
9	2017. 1. 10.	286,000	
10	2016. 5. 25.	피고(K은행 계좌)	5,000,000
11	2016. 9. 22.	5,000,000	
12	2016. 1. 27.	N	12,000,000
합계	64,286,000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와 피고 명의 K은행 W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합계

10,390,140원(= 4,271,300원 + 6,118,840원)을 지출하고, 2017. 1. 9. 이 사건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장례비 중 일부로 2,500,000원1) 을 사용하였다.

2015. 5. 13.	Y센터	65,300	2015. 5. 8.	L요양병원	394,170
2015. 8. 4.	L요양병원	700,000	2015. 6. 11.	480,000	
2015. 9. 1.	600,000	2015. 6. 24.	4,500		
2015. 12. 2.	600,000	2015. 7. 7.	623,300		
2016. 5. 10.	730,000	2015. 10. 7.	600,000		
2016. 9. 1.	576,000	2015. 11. 4.	600,000		
2016. 12. 8.	M노인전문병원	500,000	2016. 1. 11.	600,000	
2017. 1. 1.	500,000	2016. 1. 22.	10,000		
합계	4,271,300	2016. 7. 4.	1,391,000		
2016. 7. 11.	4,300				
2016. 7. 30.	M노인전문병원	325,000			
2016. 10. 5.	544,070				
2016. 11. 4.	542,500				
합계	6,118,840				

⑤ 피고는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주택을 수리하면서 수리비로 이 사건 계좌에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4,240,000원을 지출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2017. 2. 20.경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집수리에 위 돈 상당이 지출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2015. 12. 3.	Z	3,000,000
2015. 12. 7.	AA	2,340,000
2016. 1. 15.	3,900,000	
2016. 6. 10.	5,000,000	
합계	14,240,000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예금 채권을 증여받아 그중 67,713,223원(= 이 사건 계좌 2019. 4. 19.자 잔액 8,301,506 + 2019. 4. 19. 이후 입금액 86,541,857원 - 피상속인 병원비 10,390,140원 - 피상속인 장례비 2,500,000원 - 수리비 14,240,000원)을 특별수익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각 1/14 지분(= 법정상속분 1/7 × 1/2) 및 4,103,644원[= {(예금 채권 10,262,196원 + 피고 특별수익액 67,713,223원) × 1/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예금 채권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분액 10,262,196 × 1/7]이다.

라.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10쪽 3줄부터 11쪽 15줄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해당부분의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10쪽 9 내지 16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아래 표와 같이 13,075,000원(이 사건 계좌에서 지출한 2,500,000원 포함)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공동상속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례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1,510,714원[= (13,075,000원 - 이 사건 계좌 지출액 2,500,000원) × 1/7]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017. 1. 8.	주전자	175,000
2017. 1. 9.	장례식장 임대료	499,500
염습비	150,000	
매점	1,198,500	
식당	3,795,000	
장례용품	177,000	
음식물 처리비용	30,000	
상조회 추가부담비	5,000,000	

2017. 1. 8.	주전자	175,000
산소정리	2,000,000	
우비	50,000	
합계	13,075,000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19. 4. 23.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과 원고들의 위 유류분반환채권은 그』

○ 제1심 판결 11쪽 3줄의 '갑 제6호증의 1'을 '을 제6호증의 1'로, 같은 쪽 8~9줄의 '앞서 본 바와 같다'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로, 같은 쪽 12줄의 '반환채권은'을 '반환채권에 대한'으로 각 고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7가단8364 사건의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2. 16.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유류분 반환채권액 각 4,103,644원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1,510,714원과 250,140원을 뺀 나머지 2,342,790원(= 4,103,644원 - 1,510,714원 - 250,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경선

판사박세진

판사강지엽

별지

1) 2017. 1. 9. X장례식장에 지불한 2,500,000원은 장례식장 임대료, 연습비, 매점, 식당, 장례용품, 음식물 처리비용을 합한 금액(5,850,200원)의 일부로 보인다.